

###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공통부문(변경없음)

#### 제 1 편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미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이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높이·배치·형태·색채 및 건축선 계획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미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련법규 및 부산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시 참고로 한다.
- ④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 ⑤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3. “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한다.
4.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5. “권장용도”라 함은 건축물 전면부(주된 이용출입구를 설치한 면) 1개층 이상에 필요한 용도를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한다.
7.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8. “공개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9.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0.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때 주거이외의 용도는 건물전체 연면적의 40%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면 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2.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3.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4.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5.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6.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7. “도시안내판”이라 함은 미음지구로 진입하는 주진입구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18. “지구안내판”이라 함은 주 보행축상의 주요 장소 또는 지구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일정지구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19. “완충녹지”라 함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약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20.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민간부문(변경)

### 제 1 편 산업시설용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없음)

- ① 산업여건의 변화 및 용지 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② 2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획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 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공장 및 창고시설을 허용용도로 하고 개발계획상 유지업종배치계획에 의한 권장용도를 제시한다.
- ② 협동화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조합사무실, 회의실, 공동식당, 교육훈련센터, 공동시험검사장 등)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및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동종업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li> <l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조합사무실, 회의실, 공동식당, 교육훈련센터, 공동시험검사장 등) 단, 협동화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제1차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 주조업(2432)</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카트로닉스(제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ul>
1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및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동종업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및 2종 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의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렉트로닉스(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li> </ul>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13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및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동종업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li> <li>•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미음지구 개발계획상 존치건축물의 경우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제1차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 주조업(2432)</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카트로닉스(제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ul>
14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및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동종업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신문사, 오피스텔 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제1차금속제조업 중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 주조업(2432)</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카트로닉스(제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신문사, 오피스텔 제외)</li> </ul>
15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및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방송통신시설</li>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함)</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동종업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li> </ul>

### 제 3 조 (건폐율, 용적률, 높이)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 표시방법(예시)

용적률	최고높이	:	350%	5층	예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높이 5층 이하
건폐율	최저높이		80%	-	

제 4 조 (지붕)(변경없음)

- ① 건축물의 지붕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 ②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를 권장한다.

제 5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및 본 시행지침 (별표1)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 및 정보서비스업종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기업의 고유 색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대리석 등 천연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 관리동, 사무실 등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 6 조 (주차시설)

- 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의 경우 동 조례 별표 8의 기준에 의거 적정면적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 2 편 지원시설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 7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없음)

- ① 여건의 변화 및 용지 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② 2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획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8 조 (건축선의 지정)(변경없음)

-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②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 ③ 포장의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 9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 ①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주변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허용용도로 하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S1	허용용도	<b>【 s1~s3, s5~s8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인바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에 한함)	<b>【 s4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인바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 10 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변경없음)**

-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 11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및 본 시행지침 (별표1)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대리석 등 천연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제 12 조 (주차시설)

- 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의 경우 동 조례 별표 8의 기준에 의거 적정면적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 3 편 주거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 13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없음)

- ① 대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한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 14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 ①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는 1층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40%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 ②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총가구수는 4가구 이하로 한다.
- ③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li> <li>•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li> <li>•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며 건축연면적 40% 범위내 설치 가능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 용도</li> <li>•지하층 주거용도</li> </ul>

제 15 조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 16 조 (건축물의 배치)(변경없음)

- ① 단독주택의 외벽면(단, 담장 및 대문 제외)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도로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각각부분에서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거리를 후퇴
- ②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다.



## 제 17 조 (점포주택대지의 조성)(변경없음)

- ① 점포주택의 경우 대지 중 인접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20cm 이내로 하고 보도와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 제 18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및 본 시행지침 (별표1)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대리석 등 천연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 제 19 조 (외 벽)(변경없음)

- ① 건축물 외벽마감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락한다.
- ②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차폐토록 하며 색채는 지붕과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20 조 (담장 및 대문)(변경없음)

- ①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이하로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한다.
- ②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 21 조 (주차장의 설치, 진출입 통로 형태 및 위치)

- 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 4 편 상업시설용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제 22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없음)

- ① 여건의 변화 및 용지 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②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필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필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필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23 조 (전면공지)(변경없음)

-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 이상에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는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②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내구적인 장식 포장을 하여야 한다.

### 제 24 조 (공개공지)(변경없음)

- ① 본 지구단위계획내 대지로서 건축법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로변 및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공개공지 조성방식
  1. 진입구의 설치
    - 가.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통행 및 이용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간활용
    - 가.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 나. 포장부분의 조성방식은 전면 보도와 같은 재질 및 색상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설치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재  
공개공지내의 식재면적 및 식재기준은 시 건축조례 제26조(식수 등 조경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5. 피로티 구조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 25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 ① 상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산업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허용용도로 하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동물원 제외)</li> <li>•판매시설</li> <li>•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li> <li>•교육연구시설(무도학원 제외)</li> <li>•운동시설</li> <li>•업무시설</li> <li>•숙박시설</li> <li>•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제 26 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변경없음)

-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 27 조 (건축물의 전면방향)(변경없음)

- ①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한다. 다만, 폭이 같은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제 28 조 (건축물의 외벽)(변경없음)

- ① 건축물의 외벽마감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전면을 유리로 마감할 경우는 나머지 3면을 동일한 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① 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마감 재료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29 조 (셔터 및 담장)(변경없음)

- ①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대지와의 경계부 담장의 높이는 1.0m 이하로 한다.

#### 제 30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및 본 시행지침 (별표1)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대리석 등 천연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 31 조 (주차시설)

- 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의 경우 동 조례 별표 8의 기준에 의거 적정면적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제 32 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 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3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②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은 대변기 양 옆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의 너비는 1.1m 이상으로 하여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③ 보도에서 각 건축물로 출입이 가능한 경사로 등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33 조 (주소표시)(변경없음)

- ① 모든 건축물은 주출입구 우측 외벽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서로 만나는 2개 이상의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모퉁이 외벽에는 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양쪽 모두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 5 편 기타시설용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제 34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없음)

- ① 분할가능선외 획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필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필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필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35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 ① 기타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허용용도로 하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표>**

도면 번호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P1 P2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근린생활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 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제한) 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허용용도 이외 용도
GS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 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소방기술기준의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한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소방기술기준의 관한 규칙 제239조 제2항에 의한 휴게실, 간이정비시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판매시 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DR1	•배수지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도면 번호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PR1	•상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TS1	•변전소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SW1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GPI	•가스정압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sp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허용용도 이외 용도

### 제 36 조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및 용적률)(변경없음)

-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제 37 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및 본 시행지침 (별표1)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대리석 등 천연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 관리동, 사무실 등 부속건축물에 한한다.)

### 제 38 조 (건축물의 외벽)(변경없음)

- ① 건축물의 외벽마감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전면을 유리로 마감할 경우는 나머지 3면을 동일한 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 단,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① 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마감 재료를 달리할 수 있다.

##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 39 조 (주차시설)

-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최소 45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에는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360%이하(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6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 ④ 부설주차장의 경우 동 조례 별표 8의 기준에 의거 적정면적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 5 편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 제 40 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심의)(변경없음)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시
  2.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해당 용도 명시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1/100 축척이상)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7.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심의도서에 포함되는 도면의 축척은 외부공간처리에 대하여 축척 1/200이상, 지침서상의 규제내용으로 주요부분에 대하여 축척 1/500이상을 사용한다.

### 제 41 조 (지침의 조정)(변경없음)

- 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지구의 개발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에 의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지침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공공부문(변경없음)

### 제 1 편 도로

#### 제 1 조 (적용범위)(변경없음)

-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도로(이하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제 2 조 (도로의 기능)(변경없음)

- ① 차량교통의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교통연결체계를 유지한다.
- ② 지구내의 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나누며 그 정의 및 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③ 각 도로는 그 기능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제 3 조 (도로의 출입)(변경없음)

- 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조 (도로의 식재)(변경없음)

- ① 도로의 기능, 노선 등에 따라 다양한 수종을 선정한다.
- ② 동일구간의 도로에는 동일수종을 식재하되 도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 한다.
- ③ 도로의 주요 진입부나 결절부, 교통시설물 주변은 가로수의 식재패턴을 달리하여 변화를 준다.
- ④ 가로수와 인접한 시설녹지대에는 가로수 수종과 유사한 수종으로 병렬식재한다.

#### 제 5 조 (도로의 구조 및 포장)(변경없음)

- ① 보도의 포장은 도로의 성격은 물론 교차로, 보행결절점, 주요시설물 주변 등 장소의 특성에 따라 보도의 포장패턴을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획일성을 방지하기 위해 2~4종의 패턴을 반복 사용한다.
- ③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부분의 보도는 장애인, 유모차 등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와 턱이 없이 만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독특한 포장문양 또는 단위포장재를 개발하여 내구적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 제 2 편 교통시설

###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제 6 조 (보도포장)(변경없음)

- ① 연속된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차량 진출입구 및 이면도로 접속부에 설치한다.
- ② 자전거나 장애자를 위하여 경계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 ③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차량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블라드 겸 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7 조 (재료선정 기준)(변경없음)

- ① 시공이 용이하고 대량구입이 가능한 재료
-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
-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재료
- ④ 질감이 좋고 색채가 아름다우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
- ⑤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
- ⑥ 가로의 분위기에 부합되는 재료

#### 제 8 조 (조성방식)(변경없음)

- ①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 ② 보도포장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포장패턴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③ 보도이외에 장소별 특징을 부여할 곳에는 특화된 포장을 조성한다.
- ④ 포장은 보행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보는 경관도 고려하여 한다.
- ⑤ 포장패턴은 가로수식재, 조명시설 및 가로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인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도 통로의 입구 및 공동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포장은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제 9 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변경없음)

- ① 패턴포장의 도입으로 장소의 동질성 및 다양성을 꾀하여 공간의 통합과 분할을 표현한다.
- ② 단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질감과 색상을 갖는 2종류의 포장 재료의 도입을 고려한다.
- ③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원형의 패턴을 사용한다.

- ④ 공간을 상호간 대비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이용 및 이중질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 ⑤ 단위 크기가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 기다림의 공간에 사용을 유도한다.
- ⑥ 이동성이 강한 지역의 포장패턴은 울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
- ⑦ 건축물 및 부지내 요소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문양 및 질감을 선택한다.

**제 10 조 (포장기준)(변경없음)**

- ① 보차혼용 통로의 포장은 서비스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중형 차량이상의 중량에도 견딜수 있는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 ② 보행자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전면부의 보도포장은 내구성이 강한 판석 및 타일류의 포장을 권장한다.
- ③ 포장에 관련된 공공부문의 원칙들은 민간부문의 관련사항에 우선되며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 ④ 포장은 되도록 전면 재시공을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제 11 조 (사후관리)(변경없음)**

- ① 민간 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시 공사완료후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사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호등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설치기준)(변경없음)**

- ① 교차로에서 평일의 교통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신호등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교 차 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600대/시간	부도로 교통량(많은쪽) : 200대/시간
횡 단 보 도	차량교통량(양방향) : 900대 이상/피크시간	횡단보행자 : 150명/시간

② 신호등의 설치간격은 아래 기준으로 설치하며 최소 15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호등 설치간격>**

구 분	설 치 간 격	비 고
간선도로(폭 30m이상)	400 ~ 500m	연 동 제 운 용
집산도로(폭 20m이상)	200 ~ 300m	연 동 제 운 용
부득이한 경우	150m 이상	연 동 제 운 용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설치위치)(변경없음)**

- 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 ②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가각부의 끝단에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 ③ 보행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정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제 14 조 (구조 및 형상)(변경없음)**

- ① 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는 6m내지 10m, 국지도로는 4m내지 6m로 한다.
- ②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는 불법차량의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통과차량이 식별할 수 있도록 블라드 겸용 조명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소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한다.

**제 15 조 (장애자 시설)(변경없음)**

- ① 횡단보도 구간에는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휠체어와 보행자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② 산업단지내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심지역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 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 블럭을 설치한다.

### 제 3 편 차량안내체계

#### <일반사항>

##### 제 16 조 (안내체계 설치원칙)(변경없음)

- ① 광역, 주요시설, 주요가로 순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설치 함으로써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일반기준)(변경없음)

- ① 표지판에 표기할 지명은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쉽게 인지되어야 한다.
- ② 명명체계의 우선순위는 지역, 시설, 가로, 단지순으로 하고, 위계별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하나의 표지판에 표기해야 할 명칭이 중복될 경우 상위 위계순으로 표기하되 필요시 2개의 명칭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주행도중 연속된 안내가 되도록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다음 표와 같이 명명한다.

#### <차량안내체계 명명기준>

구 분	표 시 내 용	명 명 원 칙
주요지역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도로변, 주요 전면공지에 배치</li> <li>· 거리 및 도시이름 표기</li> </ul>
주요시설	시설명, 주요지역명, 방향, 교통시설 환승방법, 대표적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도가 높은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기</li> <li>·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을 위한 안내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표물을 활용</li> <li>· 시설물의 2~3개 전방 교차로로부터 표기</li> </ul>
주요가로	행선지명, 가로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방향의 가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 인접 단지명을 표기</li> <li>· 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 표기</li> <li>· 남북(홀수), 동서(짝수)가로에 일련번호를 부여</li> </ul>
주요단지	주차장위치, 단지방향, 지구내 가로망방향, 단지명(동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에 따라 단지명부여</li> <li>· 동을 기본단위로 번호체계를 구성하되 단지별로 구분</li> <li>· 단지번호는 주출입구에서 시계방향으로 부여</li> <li>· 단지경계부 교차로에 인접단지명 표기</li> </ul>

<표식판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교통안내 표지판)(변경없음)

① 구조, 형상 :

종 류	설 치 높 이	설 치 유 형
주 의	100 ~ 210cm	정주식원칙, 측주식, 문형식
규 제	100 ~ 210cm	정주식, 기타 시설물 병행
지 시	100cm 이상	정주식원칙, 측주식, 부착식
보 조	100cm 이상	부착식원칙

② 설치기준 :

-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규제, 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지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전방에 배치한다.
- 교차로 부분과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③ 배치원칙 :

-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 안전표지를 설치시 도로변이나 접속도로로부터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다.

제 19 조 (도로표지판)(변경없음)

① 구조, 형상 :

표지판종류	표지판규격	설치유형	설 치 지 점
2방향예고	290×200cm	편 지 식	교차로 전방의 100~150m이내
3방향예고	360×220cm	편 지 식	
2방향예고	170×120cm	편 지 식	전방 100~150m이내
3방향예고	170×120cm	문 형 식	

② 설치기준 :

1. 운전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 장애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표기방법 :

1. 지역의 진행방향과 전방에서 교차할 도로의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 제 20 조 (유도방향 안내판)(변경없음)

- ① 구조, 형상 : 운전자의 시선높이를 감안하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설치기준 : 주요 교차로 및 주요 건축물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절점 부근에 집중 배치한다.
- ③ 표시내용 :
  1. 주요 목표지점명
  2.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거리
  3. 가로명

## 제 4 편 보행안내체계

### <일반사항>

#### 제 21 조 (안내체계 설치원칙)(변경없음)

- ① 광역, 주변지역, 대상지 등을 단계적으로 하나의 안내판에 설치하여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안내시설과 가로 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② 보행안내판의 형태, 사용재료, 색상 등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수록정보의 위계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 ③ 독특한 식별성 및 독자성 확보를 위해 정보체계 구성요소(글자체, 도형문자)를 개발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 ④ 보행안내판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보도와 차도경계에서 보도 및 녹지내부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차량소통용 안내판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표식판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제 22 조 (도시안내판)(변경없음)

- ① 구조, 형상 : 도시의 진입부임을 나타내고 안내뿐 아니라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평형태 보다는 수직형태로 설계한다.
- ② 설치기준 : 간선가로변, 중앙분리대 또는 가로변의 인식성을 높일 수 있는 전면 공지나 완충녹지대 변에 배치한다.
- ③ 표기내용 :
  1. 주요 시설까지의 거리
  2. 도시전체의 교통망
  3. 도시명
  4. 도시로고, 색채

### 제 23 조 (지구안내판)(변경없음)

- ① 구조, 형상 : 도시 지구 주변지역의 위계별로 안내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 ② 설치기준 : 보행이 집중되는, 주진입구, 주결절점 및 주요장소에 설치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 ③ 표기내용
  1. 보행자의 현재위치
  2.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거리
  3. 교통수단, 연계상황 표시
  4.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물

### 제 24 조 (단지방향안내판)(변경없음)

- ① 구조, 형상 : 단지방향안내판은 보행자의 시선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내 상세한 정보를 표기한다.
- ② 설치기준 : 단지 주진입구와 연결된 가로변에 설치하며 예고기능의 단지방향안내판은 단지 주출입구로부터 200m이상 400m이내에 설치한다.
- ③ 표기내용 :
  1. 보행자의 현재위치
  2. 해당 단지까지의 거리
  3. 주요 가로명, 가로방향

### 제 25 조 (단지번호부여 기준)(변경없음)

- ① 단지번호는 주출입구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부여한다.
- ② 글자 크기와 글자간 간격, 배열 등을 고려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시설안내판)(변경없음)

- ① 구조, 형상 : 시설의 특성에 맞는 구조로 설계하여 여러시설을 표시, 안내하도록 한다.
- ② 설치기준 : 예고기능을 갖는 시설안내판은 반경 300m 이내의 거리를 이격하여 배치한다.
- ③ 표기내용 :
  1. 보행자의 현재위치
  2. 시설 전면부에 설치시 내주시설 안내 표기
  3. 예고기능을 갖는 안내판의 경우 시설로의 방향과 해당 시설까지의 거리 표기

## 제 27 조 (버스정차대안내판)(변경없음)

- ① 구조, 형상 : 보행자의 시선높이를 감안하여 부착 가능한 구조로 하며 차량이용 정보와는 별도로 주변지역의 현황이 표기되어야 한다.
- ② 설치기준 : 버스정차대에 부착, 설치하되 보행자의 시선차단 및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③ 표기내용 :
  1. 버스노선 안내
  2. 현재위치

## 제 5 편 공원·녹지

### <일반사항>

#### 제 28 조 (적용범위)(변경없음)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에 관한 사항>

#### 제 29 조 (조성원칙)(변경없음)

- 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 재해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시각적·심리적 효과도 증진시키도록 한다.
- ②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운행과 동시에 차광, 명암순응, 시선유도, 방향성 제고 등을 위해 설치한다.
- ③ 경관녹지의 경우는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조성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쾌적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 30 조 (식재)(변경없음)

- ① 중심가로와 주거지사이에 설정된 완충녹지대에는 가급적 주거지쪽으로 면하여 식재하는 한편, 다층식재를 통해 녹지대 기능성 향상을 도모한다.
- ②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매연·소음방지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제 6 편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 31 조 (지침의 조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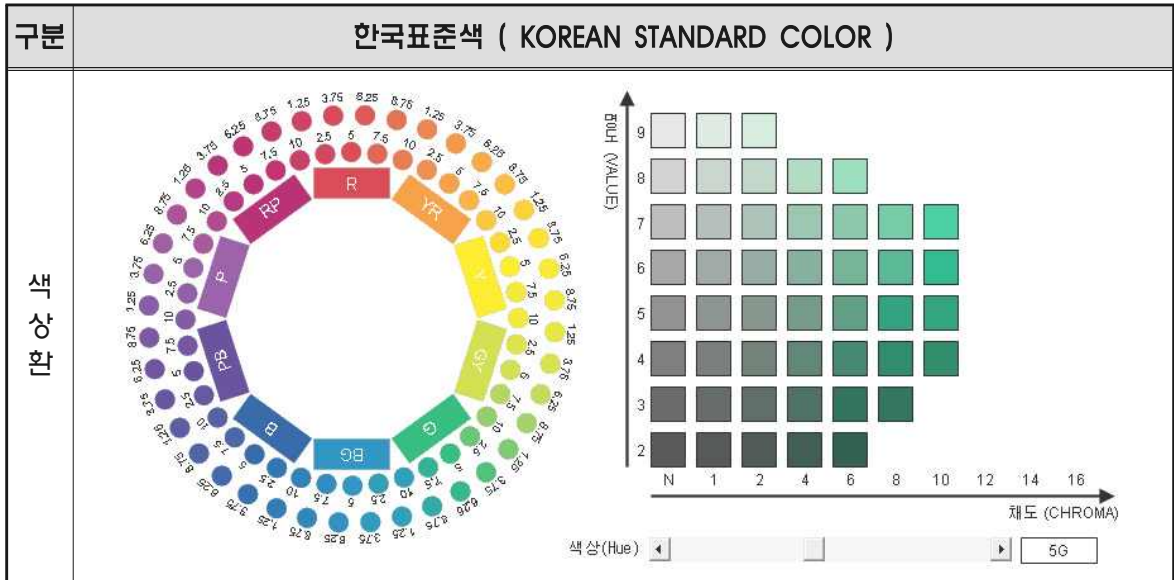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설계는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조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거나 교통관련 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 2.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 3.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별표1]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변경)

구 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비고	
산업 시설 용지	산업 시설	5G 8/1~4, 7~9/2 10BG 8/2~4, 7~8/4, 7.5GY 7/4~8, 6~8/6 5GY 8/1~4, 7~9/2	5G 8/1~4, 7~9/2 10BG 8/2~4, 7~8/4, 7.5GY 7/4~8, 6~8/6 5GY 8/1~4, 7~9/2	5G 6/6~10, 5~7/8 10BG 6/6~8, 5~7/8 2.5G 8/7~8, 7~8/8 10G 7/6~8, 6~7/8		
	지원 시설	WHITE	9N	8N		
주택 건설 용지	단 독	5YR 7/2~6, 6~8/4	5YR 7/2~6, 6~8/4	5YR 2/2~4, 2~3/4		
상업 시설 용지		WHITE	9N	8N		
공공 시설 용지	주 차 장	WHITE	9N	8N		
	주 유 소	WHITE	9N	8N		
	체 육 시 설	-	-	-		
	공급 처리 시설	배 수 지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변 전 소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상 수 도 가 압 장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하 수 처 리 시 설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전 기 공 급 시 설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0G 9/1~2, 8~9/2	10G 8/1~4, 7~9/2	10G 6/1~4, 5~7/2	
가 스 정 압 시 설		-	-	-		

※ 대리석 등 천연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표색계



구분	권 장 색 상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별표2]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변경)

구 분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위치, 크기,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함</li> </ul>		